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단505847 판결 [압류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표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2017. 12. 14.

판결 선고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00. 3. 13. 접수 제5296호로 마친 2000. 3. 9.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 4월에 원고에게 부과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30,667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0.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지분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귀속년도를 1998년으로 하고, 고지일을 2000. 1. 4., 납부기한을 2000. 1.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7,962,871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 산하 도봉세무서의 조사2과 담당자는 2000. 3. 17.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한편 원고에 대하여 귀속년도를 1999년으로 하고, 고지일을 2000. 4. 10., 납기를 2000. 4. 30.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10,430,667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도봉세무서 조사과의 납세고지서 반송대장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체납담당공무원은 2015. 6. 28. 이르러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루어져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 용인세무서에 사실증명(체납내역) 발급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기재가 되지 않은 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360원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680원만 기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2. 14.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원고 이외의 다른 지분권자들도 자신들의 지분을 함께 매도하였다), 2017. 1. 6. 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360원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680원을 납부한 후 2017. 1. 12.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의 체납담당공무원은 2017. 1. 20.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전산처리를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지 않아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 또한 그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일부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관리하는 납세고지서 반송대장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압류등기가 확정 전 보전압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고지에 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관리하는 관련 자료에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을 하고서도 그 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체납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권덕진

별지